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정애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환경친화적인 풍력발전 확대를 통해 조속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필요함.

이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업무를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평가협의를 하는 등 기타 법령 개정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조정(안 시행령 제77조제1항 18호, 별표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호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협의등의 권한 제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규제심사 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4호 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별표 2 제2호다목의 에너지 개발사업 및 별표 3 제3호의 에너지 개발사업 중 송전선로 및 옥외변전소에 관한 사업

별표 9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상사업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에 관한 에너지 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로 접수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4호가목 및 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 이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등(변경협의 및 재협의 등을 포함한다)의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9 제4호가목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기관이 변경되는 사업으로서, 2021년 3월 1일 이전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협의(변경협의 및 재협의 등을 포함한다)를 진행 중인 사업은 이 영 시행일부터 환경부장관의 관할로 한다.

제4조(계속 중인 협의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9 제4호가목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기관이 변경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장 등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게 행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변경협의 및 재협의를 포함한다), 초안의 제출, 검토의견 제출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9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주관 행정기관의 장 및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	4. ----- ----- ----- ----- --

<u>가.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u> <u>· 군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u> <u>는 에너지 개발사업, 같은 호</u> <u>다목의 에너지 개발사업 및</u> <u>별표 3 제3호의 에너지 개발</u> <u>사업 중 송전선로 및 옥외변</u> <u>전소에 관한 사업</u> 나~라. (생 략) <u>5. (신 설)</u>	<u>가. 별표 2 제2호다목의 에너지 개</u> <u>발사업 및 별표 3 제3호의 에너</u> <u>지 개발사업 중 송전선로 및 옥</u> <u>외변전소에 관한 사업</u> 나~라. (현행과 같음) <u>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상사</u> <u>업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u> <u>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u> <u>2호나목에 따른 풍력에 관한 에</u> <u>너지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u> <u>는 제외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201-7281